



# 대한내분비외과학회

## Korean Association of Endocrine Surgeons

### 대한내분비외과학회 연구학술상 규정

#### 제 1 조 (목적)

본 규정은 회원들의 갑상선내분비외과 분야의 연구 및 학술활동을 독려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연구비 지원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#### 제 2 조 (명칭)

본 학술상의 명칭은 “대한내분비외과학회 연구학술상”이라고 칭하고, 이에 지급되는 연구기금을 “대한내분비외과학회 연구기금”이라 칭하고, 영문으로는 “The research funds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Endocrine Surgeons”라고 표기한다.

#### 제 3 조 (대상)

- 신청자격은 대한내분비외과학회 정회원으로 제한한다.
- 갑상선내분비외과학과 관련된 주제의 다학제 혹은 다기관 기초 또는 임상연구를 대상으로 한다.
- 동일한 연구과제로 다른 연구비를 지원받거나 학술상을 수상한 경력이 없어야 한다.
- 본 학회의 연구기금을 받은 경력이 있는 신청자의 경우, 본 규정에서 명시한 의무를 위반한 적이 없어야 한다.

#### 제 4 조 (공모)

- 대한내분비외과학회 연구학술상 연구과제 공모 사실을 심사 일 1개월 전까지 본 학회 홈페이지와 전자메일을 통해 회원들에게 공지한다.
- 연구과제 공모 시에 당해의 구체적인 지원대상 과제, 지원 범위, 심사 방법을 명시한다.

#### 제 5 조 (심사)

- 대한내분비외과학회에 제출된 연구계획서를 연구위원회에서 적합성, 임상적 중요성, 주제의 독창성 등을 기준으로 심사하여 후보 과제들을 선정한다.
- 대한내분비외과학회 춘계 또는 추계 학술대회에서 후보 과제들의 연구계획을 발표하고, 이에 대한 평가를 통해 최종 연구과제를 선정한다.

#### 제 6 조 (수여)

- 최종 선정된 연구과제에 대한내분비외과학회 연구기금 1,000만원을 수여한다.
- 지원 단위와 지원 금액은 당해 년도 연구과제 공모 전 연구위원회가 의견을 개진하여 본 학회 상임이사회를 통과하면 변경될 수 있다.

## 제 7 조 (기금관리)

- 기금관리는 총무이사가 담당하고, 상임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집행한다.
- 기금관리의 감사는 본 학회 감사가 담당한다.

## 제 8 조 (수상자의 의무)

- 수상자가 시상식에 참석하지 않은 경우 자격이 상실된다.
- 2년 이후 본 학회의 학술대회에서 연구결과를 보고해야 한다.
- 연구 종료 시 혹은 연구기금 지급일 기준으로 만 2년 이내에 종료 보고서 혹은 중간 보고서 및 연구비 사용 내역서를 제출해야 한다.
- 연구결과의 학회 발표 혹은 논문 발표 시에 본 학회의 연구기금의 지원을 받아 진행된 연구임을 명시해야 한다.
- 본 규정에서 명시한 의무를 수상자가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사유서를 연구위원회에 제출 해야하며, 연구위원회는 이를 심사하여 연구기금 반환 여부 및 액수를 결정한다.
- 연구책임자는 연구기금 반환을 학회로부터 요구 받은 경우 이를 따라야 하며, 반환된 연구기금의 운용은 상임이사회에서 결정한다.

## 제 9 조 (부칙)

- 본 규정은 상임이사회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발효한다.
- 본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심사위원회의 결의나 일반 관행에 따른다.
- 연구 기간은 전향적 연구는 제한이 없으며, 후향적 연구는 2년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.
- 연구 참여 기관의 모집은 학회홈페이지 혹은 전자메일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며, 참여 연구 기관의 범위 및 선정 기준은 책임연구자가 결정한다.